

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칙 개정 비교표

< > 삭제 표시, _____ 첨가 표시

현 회칙	개정안
제 1 장 총칙	
제 3 조 (목적) 본회는 신,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뉴저지에 소재한 한인교회의 협의회로서 교포들의 복음화와 사회봉사, 청소년<(2 세)>교육, 평신도들의 신앙 향상을 위해 교회적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,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규제하며, 범 교회적 사업과 공동의 관심사의 협의와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.	제 3 조 (목적) 본회는 신,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 뉴저지에 소재한 <u>한인교회들</u> 의 협의회로서 <u>동포들</u> 의 복음화와 사회봉사, 청소년 교육, <u>교인들의</u> 신앙 향상을 위해 교회적 사명과 본분을 다하고, 이단과 사이비 종파를 규제하며, 범 교회적 사업과 공동의 관심사의 협의와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회원	
제 4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, 회원교회는 교역자 1 인과 평신도 1 인의 총대를 파송한다.	제 4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된 교회로 하며, 회원 교회는 <u>담임교역자</u> 1 인과 평신도 1 인의 총대를 파송한다.
2. 가입절차는 본회 소속 교역자 1 인과 소속 교단 교역자 1 인의 서면추천으로 회기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(단, 소속 교단이 없는 경우는 본회 교역자 추천을 1 인 추가하여 받는다.)	2. 가입절차는 본회 소속 교역자 1 인과 소속 <u>교단 대표의</u> 서면추천으로 회기 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<u>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(단, 소속 교단이 없는 경우는 본회 교역자 <u>3인</u> 의 추천을 받아야한다.)
3. 기관에 소속된 교역자는 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여 회원 자격을 갖되 발언권과 선거권만을 갖는다.	삭제
7 조의 내용	3. <u>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관련 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.</u>
제 5 조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, 규정된 회비와 <사업 부담금 납부의> 의무를 가진다.	제 5 조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, 규정된 <u>회비 납부의</u> 의무를 진다.
제 6 조 (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, 결의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	제 6 조 (권리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, <u>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</u> , 결의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 3 장 임원 및 위원회	
<제 7 조 (징계) 본회의 목적에 상치되는 행위를 저지른 회원은 임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에 의하여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.>	제 7 조의 내용은 삭제되고 제 4 조 3 항에 첨부
제 8 조 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(제 7 조로) 회장 1 인, 부회장 2 인(교역자 1 인, 평신도 1 인), 총무 1 인, 협동총무 약간명, 서기 2 인(사무 1 인, 기록 1 인) 회계 2 인(사무 1 인, 기록 1 인)	제 7 조 (임원)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장 1 인, 부회장 2 인(교역자 1 인, 평신도 1 인), 총무 1 인, 협동 총무 약간명, 서기 2 인(사무 1 인, 기록 1 인), 회계 2 인(사무 1 인, 기록 1 인)

<p>제 9 조 (감사) 본회의 총회는 감사 2 인을 선정한다. (제 8 조로)</p>	<p>제 8 조 (감사) 본회는 <u>공정한 재정운명을 위해</u> 감사 2 인(<u>교역자 1 인, 평신도 1 인</u>)을 총회에서 선정한다.</p>
<p>제 10 조 (임원의 임무)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(제 9 조로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장: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. 2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. 3. 총무: 각 분과 위원장과 협력하여 임원회와 총회가 결의한 사업을 총괄한다. 4. 서기: 본회의 사무와 기록을 담당한다. <p>회계: 본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</p>	<p>제 9 조 (임원의 임무)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장: 본회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. 2. 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. 3. 총무: 각 분과 위원장과 협력하여 임원회와 총회가 결의한 사업을 총괄한다. 4. 서기: 본회의 사무와 기록을 담당한다. 5. 회계: 본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.
<p>제 11 조(분과위원회) (제 10 조로) <13. 사모분과: 사모들의 친목과 교육을 위한 사업과 행사를 주관한다.></p>	<p>제 10 조,13 항 사모분과 삭제</p>
<p>없음</p>	<p>제 11 조 (특별위원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회칙위원회: 본회의 회칙 및 규정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</u> 2. <u>선거관리위원회: 본회의 정부회장 선거를 관리한다.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</u> 3. <u>공천위원회: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중경회장들로 구성하며, 정부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시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</u> 4. <u>회관건립위원회: 본회의 발전과 회관 건립을 위하여 조직, 운영한다.</u> 5. <u>이단대책위원회: 신학과 이단, 사이비 종파를 연구하여 발표하며 이단교리와 활동을 차단, 제거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</u>
<p>제 15 조 (회의) 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기총회: 정기총회는 매년 9 월 중에 모이며, <예산> 결과보고, 임원개선, 회칙개정 등을 행하며, 총회 공고는 한달 전에 하여야 한다. 총회의 성원은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모인 총대로 한다. 	<p>제 15 조 (회의) 본회의 각종 회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기총회: 정기총회는 매년 9 월 중에 모이며, <u>결산보고, 임원개선, 회칙개정</u> 등을 행하며, 총회 공고는 한달 전에 하여야 한다. 총회의 성원은 공고된 장소와 시간에 모인 총대로 한다.
<p>제 16 조 (선거) 본회의 모든 선거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장, 부회장은 출석회원 2/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, 3 차 투표에서는 <u>최다 득표자로 한다.</u> 	<p>제 16 조 (선거) 본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장, 부회장은 출석회원 2/3 이상의 득표자로 하되, 3 차 투표에서는 <u>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.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는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.</u>
<p>없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<u>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아 3 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</u>
<p>없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<u>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장 취임식 이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</u>
<p>제 20 조 (회관 건립 특별위원회)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발전과 회관 건립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.</p>	<p>제 20 조 삭제하고, 제 11 조 4 항으로 첨부</p>